

2026학년도 3월 수시입학 전형(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 합격자 사증(비자) 발급 및 변경 안내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외국 국적 학생 중 유학(D-2) 비자(사증)을 신규 발급 받아야 하는 학생은 반드시 입국 전 유학(D-2)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는 모든 외국 국적 학생 중 유학(D-2) 비자(사증)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학생은 개강일(2026.3.2.) 전까지 유학(D-2) 비자(사증)로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는 외국 국적 유학생이 대한민국 유학(D-2) 비자 신청 시 각국 대한민국 영사관(국내의 경우 춘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재외공관(현지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 또는 춘천출입국사무소에 문의 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임을 밝혀야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원본 서류(학력요건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 및 등록금 납부를 완료한 유학생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유학생 본인의 책임이니 반드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D-2비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D-2) 비자 이외의 비자(F, A 등)로 유학하고자 하는 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아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증 사실 증명서 1부를 기한 내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입학처로 특급우편으로 제출(*주소 및 제출기한은 2페이지 참조)하여 유학 가능 비자 소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모든 유학생은 유학이 가능한 비자(D-2 및 그 외 일부 비자)를 가진 경우에만 유학 활동이 가능합니다. D-2 이외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유학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 여부를 본인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 활동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유학 활동을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표준입학허가서는 1회의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에 한해 유효하며, 개강일(2026.3.2.) 이후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이후라도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및 유학(D-2) 비자가 무효화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지침에 따라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에 출국하면 기존 비자가 만료되고 재입국을 위해 새로운 표준입학허가서와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개강일 이후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불가하며, 입학 후 첫 번째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해 자퇴를 고려해야 하므로,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수령 전에 출국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강일(2026.3.2.) 이후 미입국에 따른 수업 결손은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표준입학허가서 및 비자를 사전에 발급받아 개강일 전에 입국을 권고합니다.
- ** 2026-1학기 입국 마감 일자: ~ 2026.3.23.(월)까지**

(다음 페이지)

[(D-2비자 신규 발급)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관련 안내]

1.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 제출 일자

* 기간: (수시 합격자만) ~ 2026년 1월 29일(목)까지 ※ 기간 엄수!!!

* 주소: Office of Admissions and Recruitment, Yonsei University, 1 Yonseidae-gil, Wonju, Gangwon state, 26493, Republic of Korea (Coordinator: 조수현 Ms. Cho, (Tel) +82-33-760-2827)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 입학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원본 서류는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표준입학허가서를 위한 발급서류는 심사 중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한국어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인 경우 영문 또는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D-2비자 신규 발급)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① 여권 컬러 사본 1부 (반드시 컬러로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제출한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② 국내외 은행에서 발행한 원화 1,800만 원 이상 (환율기준일 2026.1.19.) 예금잔고증명서 원본(영문)

가) 사증(비자)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예금잔고증명서 제출 원칙

※ 2026년 1월 19일 이후 발급된 잔고증명서 원본만 접수 가능

※ 단, 잔고증명서 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나) 본인 또는 부모 명의(부모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 증명서만 제출 가능

※ 부모 명의 잔고증명 제출시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음

다) 잔고증명서 금액은 체류 허가 기간 동안 유지 원칙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 시 시차를 두어 잔고 보유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음)

라) 대학에 제출한 잔고증명서 원본은 학생에게 반환 불가

마) 잔고증명서 원본은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표준입학허가서 신청을 위해 미래입학처에 제출하고, 1부는 유학(D-2) 비자 신청 시 각국 재외공관에 제출할 것

※ 중국 소재 은행 발행 영문 예금잔고증명서는 아래 요건까지 모두 충족 시에만 인정

1) 사증(비자)발급 신청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발급된 원본만 접수

※ 2026년 1월 19일 이후 발급된 잔고증명서 원본만 접수 가능

2)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예금 동결 기간)이 2026년 5월 31일까지 예치되어 있어야 함

3) 중국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 중국농업은행(中国农业银行), 중국은행(中国银行)에서 발행한 예금잔고 증명서만 제출 가능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위 3대 은행 잔고증명서만 접수함.

* 예금잔고증명서 발급 일자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될 경우 재외공관(영사관, 대사관)에서는 잔고 증명서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따라서 재외공관의 잔고증명서 재제출 요청에 대비하여 위 3대 은행에서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반드시 횡수 제한 없이 잔고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한 은행인지 확인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③ 최종학력 입증서류 (a~d 중 하나를 선택)

a)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원본 (별도의 공증 불필요)

b) 일반국가(대한민국 및 중국 제외) 소재 교육기관 학위(학력) 취득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또는 영사 확인(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입학 구분		제출서류
수시입학	학사(D-2-2)	고교 졸업증명서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공관의 영사)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 (영문 또는 국문으로 발급되지 않은 증명서) 공증된 영문 번역본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일본 소재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해당국 규정에 따라 졸업증명서를 2026년 3월 중 발급받는 일본 국적 신입생) →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고, 개강일로부터 8주 이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를 보완 제출 (보완 제출 불가 시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

※ **중국내 학력·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㉔~㉖'만 적용**

㉔ (원칙)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인증센터[CHSI(学信网)] 발행 학위 등 고교 졸업 사실 영문 인증보고서(学历认证报告) 1부

** Sample: https://www.chsi.com.cn/en/pvr/brief_cseqc.jsp

㉖ (예외)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CHSI)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

구분		심사기준
중등 직업 학교	보통중등전문학교 (普通中专) Regula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①-i), ②-i), ②-ii) 중 하나 선택 ① 온라인 발행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직업고등학교 (职业高中) Vocational High Schools	② 오프라인 발행 (학교정보확인서 양식 작성 후 제출 필수)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ii)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성교육청(시교육국) 확인 + Apostille 확인 필요 *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의 경우 교육청 공식 명칭은 '교육위원회'임 * 학교 정보 확인서 양식 → 합격자 발표문 내 첨부파일 참조
	성인중등전문학교 (成人中专) Adult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조회본 http://www.mohrss.gov.cn/ + Apostille 확인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기술공업학교 (技工学校) Skilled Workers Schools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3. 결핵 관련 서류 안내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원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16.3.2.), 라오스('17.9.1.),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이상 '20.4.1.지정)

※ 위 국가 이외의 모든 유학생도 교내 생활관 입사 시 각 기숙사별 안내데스크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영문 결핵 진단서' 사본을 제출해야만 입사가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체류자격 변경(D-2 비자로 변경)_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관련 안내]

- **첫 페이지의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D-2)비자로 비자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 국적 유학생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교류원에서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가지고 춘천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D-2비자로 사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사증 변경 시 국가 및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 유형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춘천출입국사무소 방문 전 학생 본인이 추가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문의, 문의 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임을 밝혀야 함)
※ 춘천출입국사무소 방문 전 www.hikorea.go.kr - 민원신청 - 방문예약신청 필수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한국어연수생이 학부 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국제교류원에서 대리로 사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 본인의 비자 만료일자가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개강일 이전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여 개강일(2026.3.2.)부터는 변경된 유학 사증(D-2)을 소지하고 체류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은 신청 후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 **사증변경 신청 후 외국인등록(D-2 비자)증 소지 전까지 출국 절대 불가** (새로운 D-2비자 외국인 등록증 수령 후 출국 가능)

※ 춘천출입국 사무소 방문 전 제출해야 하는 정확한 서류에 대해 다시 한 번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유학생임을 밝혀야 합니다.

1. 사증변경 대상: ①D-4(국내 어학연수)비자 보유자 또는 ②유학(D-2)비자로 변경 가능한 비자 보유자

- * ①, ② 비자 보유자 모두 2026년 2월 말까지 비자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 서류제출 장소: 춘천출입국 사무소

2. (D-2비자로 변경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관련 서류 제출 일자

- * **기간: (수시 합격자만) ~ 2026년 1월 29일(목)까지 ※ 기간 엄수!!!**
- * **주소: Office of Admissions and Recruitment, Yonsei University, 1 Yonseidae-gil, Wonju, Gangwon state, 26493, Republic of Korea (Coordinator: 조수현 Ms. Cho, (Tel) +82-33-760-2827)**

(다음 페이지)

3. (D-2비자로 변경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 ※ 입학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원본 서류는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표준입학허가서를 위한 발급 서류는 심사 중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한국어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인 경우 영문 또는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D-2비자로 변경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① 여권 컬러 사본 1부 (반드시 컬러로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제출한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②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예금잔고증명서는 사증 허가 기간 동안 유지 원칙.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 시 시차를 두어 잔고 보유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음.

③-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D-4) 후 유학비자(D-2)로 변경 시

→ 국내 은행에서 발행한 **원화 900만 원 이상** 예금잔고 증명서 원본

가) 비자(사증) 변경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예금잔고증명서 제출 원칙

※ **2026년 1월 19일 이후** 발급된 잔고증명서 원본만 접수 가능

※ 단, 잔고증명서 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나)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제출 가능

③-2 ②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내 체류 중인 기타 체류자격 사증 보유자가 유학비자(D-2)로 변경 또는 ⑥한국내 체류 중인 타대학 한국어연수생(D-4)이 유학비자(D-2)로 변경

→ 국내 은행에서 발행한 **원화 1,8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가) 비자(사증) 변경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예금잔고증명서 제출 원칙

※ **2026년 1월 19일 이후** 발급된 잔고증명서 원본만 접수 가능

※ 단, 잔고증명서 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나)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제출 가능

④ 최종학력 입증서류 (㉠~㉣ 중 하나를 선택)

㉠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원본 (별도의 공증 불필요)

㉡ 일반국가(대한민국 및 중국 제외) 소재 교육기관 학위(학력) 취득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또는 영사 확인(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공관의 영사)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입학 구분		제출서류
수시입학	학사(D-2-2)	고교 졸업증명서

※ (영문 또는 국문으로 발급되지 않은 증명서) 공증된 영문 번역본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일본 소재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해당국 규정에 따라 졸업증명서를 2026년 3월 중 발급받는 일본 국적 신입생) →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고, 개강일로부터 8주 이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를 보완 제출(보완 제출 불가 시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

※ 중국내 학력·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㉔~㉖'만 적용

㉔ (원칙)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인증센터[CHSI(学信网)] 발행 학위 등 고교 졸업 사실 영문 인증보고서(学历认证报告) 1부

** Sample: https://www.chsi.com.cn/en/pvr/brief_cseqc.jsp

㉖ (예외)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CHSI)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

구분		심사기준
중등 직업 학교	보통중등전문학교 (普通中专) Regula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①-i), ②-i), ②-ii) 중 하나 선택 ① 온라인 발행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직업고등학교 (职业高中) Vocational High Schools	② 오프라인 발행 (학교정보확인서 양식 작성 후 제출 필수)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ii)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성교육청(시교육국) 확인 + Apostille 확인 필요 *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의 경우 교육청 공식 명칭은 '교육위원회'임 * 학교 정보 확인서 양식 → 합격자 발표문 내 첨부파일 참조
	성인중등전문학교 (成人中专) Adult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조회본 http://www.mohrss.gov.cn/ + Apostille 확인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기술공업학교 (技工学校) Skilled Workers Schools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광역형 비자 발급 희망자 → P.9 참조]

※ 위 ③-1 또는 ③-2-⑥에 해당하는 신입생 중 [글로벌엘리트학부, 자율융합계열, 디자인예술학부] 신입생은 일반 유학비자와 비교하여 재정능력(잔고증명서)요건 및 시간제 취업 등의 요건이 완화된 '광역형 D-2 비자' 발급 가능 대상입니다.

※ '광역형 D-2 비자' 발급 신청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학생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D-2비자로 변경 신청됩니다.

4. 결핵관련 서류 안내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원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16.3.2.), 라오스('17.9.1.),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이상 '20.4.1.지정)

※ 위 국가 이외의 모든 유학생도 교내 생활관 입사 시 각 기숙사별 안내데스크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영문 결핵 진단서」 사본을 제출해야만 입사가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로)

광역형 비자 신청 안내문

2025.06.13.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제정(안) 기준 작성

광역형 비자란?

법무부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제도를 설계, 우수 인력의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간: 2025.6.13.~2026.12.3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경우 **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자율융합계열, 디자인예술학부**에 해당됩니다.

일반 유학비자와 비교하여 재정능력요건 및 시간제 취업 등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건이 완화된 바 있으니, 관심이 있는 학생은 기한 내 광역형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은 2025.06 광역형 비자 관련 지침 기준으로,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2025년 기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입니다.

1. 신청 대상: 아래 가~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2026학년도 3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학부 외국인 수시입학전형(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글로벌엘리트학부, 자율융합계열, 디자인예술학부 모집에 합격한 자로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 내 체류 중이며, 한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서**

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D-4) 수료 후 유학비자(D-2)로 변경을 희망하는 자 또는

2) 타 대학 한국어연수(D-4) 수료 후 유학비자(D-2)로 변경을 희망하는 합격자

※ **학부 유학비자(D-2-2)를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광역형 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광역형 D-2 비자’는 필수 사항이 아닌 학생 선택사항으로, 학생이 신청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D-2비자로 변경 신청됩니다.**

2. 쿼터 배정인원: 글로벌엘리트학부(5명), 자율융합계열(4명), 디자인예술학부(1명)

※ 신청자가 쿼터 배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학교 내부 기준에 따라 선발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추천요청 예정

3. 광역형 비자 특례 안내

가. 재정능력 기준 특례

○ (적용 시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 (재정능력 범위) 등록금과 체재비 일체를 말함

○ (재정능력 기준) 광역형 비자 유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시 **연간 800만 원 이상**

-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국내 주거래 은행계좌 월 평균 62만원 이상 잔고 유지 필요, 잔고증명서 제출 불가**

- **추후 체류기간 연장에 불이익이 없도록 국내 주거래 은행계좌의 잔고 유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기준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시 연간 800만원 이상 ※ 입국 이후 국내 주거래 은행계좌 월평균 62만원 이상 잔고 유지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 입학 후 체류기간 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기준

- (인정요건) 유학 중 주거래 은행 계좌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한 경우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62만 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

※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은 근로 활동에 따른 급여·소득도 체재비로 인정

- (입증방법)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 간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 (계좌변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계좌는 변경 불가

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광역형 비자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일반 비자 주중	일반 비자 &광역형 비자 주말·방학	
학사	3~4 학년	① TOPIK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박사	-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		30시간	무제한	35시간

○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광역형 비자 유학생(D-2)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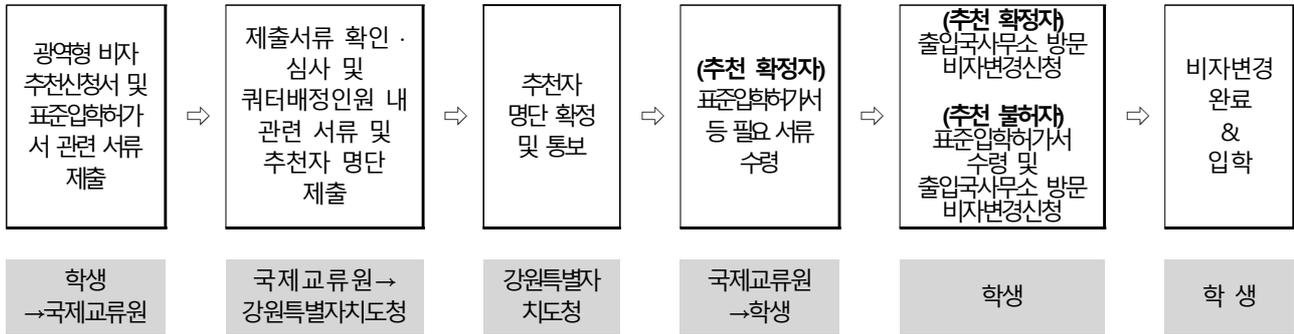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기타 시간제취업 제출 서류, 허가 내용 등은 기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4. 광역형비자 추천 신청 절차



5. 광역형 비자 신청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 ※ 입학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원본 서류는 중복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표준입학허가서를 위한 발급 서류는 심사 중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 모든 서류는 영문 또는 한국어로 발급되어야 하며, 기타 언어인 경우 영문 또는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
- ※ 사증 변경 시 국적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춘천출입국사무소 방문 전 학생 본인이 제출 서류 확인 필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문의, 문의 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이며, **광역형비자 신청 예정임**을 안내해야 함)

(광역형 비자 신청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 ① 여권 컬러 사본 1부 (반드시 컬러로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제출한다)
 -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②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 ③ 광역형 비자 추천 신청서 1부
- ※ '광역형 D-2 비자'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학생이 신청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D-2비자로 변경 신청됩니다.

※ 예금잔고증명서는 사증 허가 기간 동안 유지 원칙.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 시 시차를 두어 잔고 보유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음.

- ④-1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교류원 한국어연수(D-4) 후 유학비자(D-2)로 변경 시
- ④-2 ⑥한국내 체류 중인 타대학 한국어연수생(D-4)이 유학비자(D-2)로 변경
 - 국내 은행에서 발행한 ★원화 9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서 원본
 - 가) 비자(사증) 변경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예금잔고증명서 제출 원칙
 - ※ 2026년 1월 19일 이후 발급된 잔고증명서 원본만 접수 가능
 - ※ 단, 잔고증명서 상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나)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제출 가능

⑤ 최종학력 입증서류 (㉠~㉣ 중 하나를 선택)

- ㉠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원본 (별도의 공증 불필요)

- ⑥ 일반국가(대한민국 및 중국 제외) 소재 교육기관 학위(학력) 취득자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또는 영사 확인(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공관의 영사)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

입학 구분		제출서류
수시입학	학사(D-2-2)	고교 졸업증명서

※ (영문 또는 국문으로 발급되지 않은 증명서) 공증된 영문 번역본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영사(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

※ (일본 소재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해당국 규정에 따라 졸업증명서를 2026년 3월 중 발급받는 일본 국적 신입생) →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고, 개강일로부터 8주 이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졸업증명서를 보완 제출(보완 제출 불가 시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

※ 중국내 학력·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㉔~㉔’만 적용

- ㉔ (원칙)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 학위인증센터[CHSI(学信网)] 발행 학위 등 고교 졸업 사실 영문 인증보고서(学历认证报告) 1부

** Sample: https://www.chsi.com.cn/en/pvr/brief_cseqc.jsp

- ㉔ (예외)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인증센터(CHSI)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

구분		심사기준
중등 직업 학교	보통중등전문학교 (普通中专) Regula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①-i), ②-i), ②-ii) 중 하나 선택 ① 온라인 발행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직업고등학교 (职业高中) Vocational High Schools	② 오프라인 발행 (‘학교정보확인서’ 양식 작성 후 제출 필수)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ii)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성교육청(시교육국) 확인 + Apostille 확인 필요 *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의 경우 교육청 공식 명칭은 ‘교육위원회’임 * 학교 정보 확인서 양식 → 합격자 발표문 내 첨부파일 참조
	성인중등전문학교 (成人中专) Adult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조회본 http://www.mohrss.gov.cn/ + Apostille 확인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기술공업학교 (技工学校) Skilled Workers Schools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Apostille 확인 필요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단, 학력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4. 결핵관련 서류 안내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원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이상 '16.3.2.), 라오스('17.9.1.),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이상 '20.4.1.지정)

※ 위 국가 이외의 모든 유학생도 교내 생활관 입사 시 각 기숙사별 안내데스크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영문 결핵 진단서' 사본을 제출해야만 입사가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일반 유학 비자와 광역형 유학 비자 비교사항(2025년 기준)

1. 재정능력

일반유학비자				광역형 비자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구 분	우수인증대	인증대	일반대 이하
원칙적 기준	학위과정 : (지방) 연간 1,600만 원 이상 ※ 단 유학생이 동일대학 상급과정에 진학하는 등록외국인인 경우 1/2 완화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 사증 발급 또는 체류자격변경 시 연간 800만원 이상 ※ 입국 이후 국내 주거료 은행계좌 월평균 62만원 이상 잔고 유지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원칙적 기준)	원칙적 기준 적용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제출 면제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제외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체류자격 변경		제출 면제 ※ 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 관리 국가 국민 1/2 완화 제출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1/2 완화 제출	C학점 이상, 출석율 70% ↑	제출 면제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1/2 완화 제출		C학점 미만, 출석율 70% ↓	광역형 비자 원칙적 기준 적용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과정 수료자 등 (논문작성 등)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체류개월 수) × 1/2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정부초청장학생, 재외동포, 국내장기체류자	제출 면제 ※ 장학증서 등 입증서류 제출		

2. 시간제 취업

일반유학비자						광역형 비자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주중)
					주중	주말·방학							주중	주말·방학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전문 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학사	1~2 학년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학사	1~2 학년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 박사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석· 박사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0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석· 박사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석· 박사	-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5시간		15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O		30시간	무제한	35시간

3. 인턴 활동

일반유학비자	광역형 비자
<p>○ 학위과정 유학생(D-2-5 제외)의 학업과 연관된 소속대학 내 수익적 연구 또는 인턴 활동은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p> <p>① (소속대학 내 연구·인턴 활동) 대학 및 산학협력단 등으로부터 연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면제 -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p> <p>② (소속대학 외 연구·인턴 활동) 소속대학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연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턴 참여 : 시간제 취업허가 필요 - 학업과 무관한 연구·인턴 참여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p>	<p>○ 대상자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기간 기준) 전문학사 3학기 이상 · 학사 3학년 이상 수료 후, 석·박사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사통프로그램 4단계 이상(또는 TOPIK 4급 이상) - (영어트랙과정) 학년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p>※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 <p>※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 기간) 1회, 최대 1년 이내(단, 전문학사의 경우 1회, 최대 6개월 이내) <p>○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 (E-1~E-7) 인턴*활동 허용</p>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특별자치도 광역형 비자 추천 신청서

본인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2026학년도 3월 학부 외국인전형 합격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형 비자의 추천자로 선발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인적 사항			
여권 영문명		수험번호	
성별		입학 학부(학과)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영문)		한국 내 본인 전화번호	
E-mail			
확인 사항(한 문항이라도 “아니오” 인 경우 추천 심사 불가)			
1. 나는 2026학년도 학부 글로벌엘리트학부, 자율융합계열, 디자인 예술학부의 합격자입니다.			네 / 아니오
2. 현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 내 체류 중이며, 한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 아니오
3. 현재 내가 소지한 비자는 어학연수비자(D-4-1)이며, 한국 내 비자 변경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네 / 아니오
4. 광역형 비자는 학교별 쿼터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자가 더 많을 경우 학교 내부 기준에 따라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 아니오
5. 광역형 비자와 일반 유학비자의 차이(신청 시, 체류 시)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 아니오
6. 광역형 비자 추천 신청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네 / 아니오
7. 추천자로 선발되지 않거나, 추천자로 선발되어 비자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광역형 비자로의 변경이 거절되는 경우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 아니오
8. 광역형 비자의 추천자로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잔고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 아니오
9. 광역형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본인의 인적사항 및 광역형비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관련 기관(강원특별자치도청, 출입국사무소 등) 제공됨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네 / 아니오
10. 작성된 이메일주소 및 한국 내 핸드폰번호로 광역형비자 관련 내용이 안내됨을 확인하였고,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 아니오
11. 현재 안내된 내용은 2025년 6월 광역형비자 관련 지침 내용이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세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 아니오

신청 일자: _____
 신청자 이름: _____
 신청자 서명(인): _____